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19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정희용・박준태・주호영

김선교 • 박덕흠 • 김형동

김성원 · 정동만 · 고동진

김태호 · 서천호 · 조지연

임이자 • 유재옥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피해지역 등 산림 재난·재해·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되어도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대규모 벌채 이후 조림을 통한 산림 복구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산불이 발생하여 입목이 대규모로 소실되거나 소나무재선충 병으로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지역은 조림으로 복구하는 방법 외에 산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 등을 유도하여 새로운 산림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임업용산지에서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 의 피해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 또는 고사되었을 경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법률 제 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업용산지가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하여 입 목이 소실되거나 고사하는 등 임업생산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①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u>利1</u>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	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		
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			
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임업용산지가 대형 산불 또		
	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		
	하여 입목이 소실되거나 고사		
	하는 등 임업생산 기능이 상		
	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